

진흥회 게시판

전기용품안전관리법운용에 관한 지침 주요 개정내용

1997.6.7 통상산업부고시 제 1997-103호 전면 개정

1998.4.9 산업자원부고시 제 1998-18호 개정

- * 최초로 형식승인을 신청한 제조업체에 대한 사전 공장검사 실시

종전

최초로 형식승인을 신청한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형식승인 후 6월이내에 자체검사 이행여부의 확인, 공장등급 사정을 위하여 공장검사 실시

개정

형식승인전에 자체검사 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공장검사와 차기년도에 공장등급 사정을 위한 공장검사 실시

- * 제조업체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에 대한 형식승인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시료채취 방법 변경

종전

안전관리협회가 해당업체에 출장하여 시료 채취

개정

해당업체가 직접 시료를 채취

- * 최초 형식승인후 6월이내에 실시하는 공장검사 폐지 및 공장등급 사정을 위한 공장검사 별도 실시

종전

최초로 형식승인을 득한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형식승인후 6월이내에 공장검사를 실시하여 자체검사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주기적 사후관리 기준이 되는 등급 사정

개정

제3조 제2항의 개정에 의해 형식승인전에 공장검사를 실시토록 함으로써 형식승인후 실시하는 공장검사를 폐지하고, 등급사정을 위한 공장검사도 최초 형식승인이 있은 차기년도에 실시

- * 수입전기용품 형식승인시 조건을 강화하여 소비자 보호 제고

종전

수입전기용품 형식승인시 부과할 수 있는 조건이 사후봉사체제 등 6개항목임

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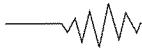
위의 6개항목 조건 부과 사능항목에 “전기용품의 부분품 교체·변경의 금지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여 주요 수입제품의 경우 안전에 중요한 부분품이라고 판단한 경우 무단 교체 또는 변경을 금하는 조건 부과

- * 수입전기용품 형식승인 적용배제 대상 확대 및 확인기관 변경

<적용배제 대상 확대>

종전

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및 기업부설연구소가 자기수요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전기용품



개정

교육법에 의한 학교, 기업부설연구소 및 비영리 연구기관이 자기수용의 연구개발 및 시설기자재로 수입하는 전기용품

<확인기관 변경>

종전

주무부장관

개정

한국전기용품안전관리협회장

* 형식승인번호 중 광역시로 승격된 울산광역시에 지역번호 신규로 부여
번호명 : “16”

외국의 무역투자장벽 사례 이용안내

산업자원부는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97.6월 외국의 무역·투자장벽 사례집을 발간한 데 이어, 97.12월부터 사례내용의 수시보완 및 검색,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 신고 등 편의를 위해 인터넷(주소 : <http://www.kotra.co.kr/FTB/>)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공동으로 외국의 무역투자장벽 네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많은 업체들의 데이터베이스의 활용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 문 의 처 : 산업자원부
- 담 당 : 이기영
- T E L : 503-9445

<이용 메뉴 설명>

♣ 장벽사례 메뉴(공통 이용)

• 장벽사례

- 장벽해결사례
- 각국의 불공정무역보고서
(98년 하반기 서비스 예정)

♣ 애로신고 메뉴(기업·개인 이용)

- 수출·투자 등 해외영업활동상 겪고 있는 애로를 신고

♣ 정부사용자 전용메뉴

• 애로처리

접수된 애로내용에 따라 분류된 소관기관이 처리하거나 다른 기관으로 이관하는 메뉴

• 입력자료현황

이 D/B에 입력된 자료의 각종 현황을 파악

♣ 사전식 참조메뉴(98년 하반기 서비스 예정)

• WTO규정

WTO 각 협정의 국문 및 영문 규정

• 각국 법규

주요국가의 통상관련법규

• 통상용어

통상관련 전문용어에 대한 해설

* 이 D/B는 넷스케이프 32bit가 설치된 PC에서만 이용 가능.

수출보험공사 수출신용보증제도 안내

1. 제도 개요

- 중소수출업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무역금융을 수혜받고자 하는 경우 통상 담보를 제공하게 되는데, 이 경우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수출업체를 위하여 정담보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이다.
- 수출거래와 관련하여 중소수출자가 수출신용보증서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음에 따라 발생하는 수출자의 채무에 대하여 수출 보험공사가 그 지급을 연대보증하며 무역



금융 수혜시기에 따라 선적전과 선적후로 구분 운영된다.

2. 수출자가 받는 혜택

-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출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수출자금을 용이하게 대출받을 수 있다.
- 통상의 보증과는 달리 수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궁극적으로 수출자의 자금부담 완화
- 별도의 담보제공없이 저렴한 보증료로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3. 주요 내용

가. 보증하는 채무

- 선적전 : 신용보증부 대출원금 및 약정이자
- 선적후 : 신용보증부 대출원금

나. 적격 수출자

-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중소기업

다. 신용보증 대상대출

(선적전)

- 일반수출입 금융 및 농수산물 수출 준비자금 대출
- 수출입은행법에서 정한 수출자금대출의 제작 금융(자본제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포함)
- 상기관련 자금 대출
- 기타 공사가 인정하는 자금 대출

(선적후)

- 국내에 주소를 둔 수출자가 국내에서 생산·가공·집하된 물품을 수출하는 거래
- 국내기업의 해외현지법인이 생산·가공한 물품 또는 국내기업이 위탁하여 외국에서 가공한 물품을 수출하는 거래

라. 보증요율
(선적전)

채무자등급	A	B	C	D	E	F
연료율(%)	0.4	0.6	0.8	1.0	1.2	1.4

(선적후)

보증기간(일)	보증요율(%)
30	0.05
60	0.07
90	0.10
180	0.20

마. 이용절차

- ① 수출자, 수입자 신용조사 의뢰(수출자 → 공사)
- ② 수출신용보증 청약(수출자 → 공사)
- ③ 수출신용보증 약정체결(수출자 ↔ 공사)
- ④ 【선적전】 보증료 납부(수출자 → 공사)
- ⑤ 수출신용보증서 발급(공사 → 은행)
- ⑥ 대출통지(은행 → 공사)
- ⑦ 보증관계 성립(공사 ↔ 은행)
- ⑧ 【선적후】 보증료 납부통지(공사 → 수출자)
- ⑨ 【선적후】 보증료 납부 : 대출받은 날의 다음 달 25일(수출자 → 공사)

문의처

한국수출보험공사 단기영업부

Tel : (02)399-6805, 6593

Fax : (02) 399-6782

중企·벤처기업 창업·육성

IBRD차관 7천억 지원

정부는 최근 부도기업이 증가하는 데 비해 창



업은 감소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고용불안 및 경영난 해소를 위해 세계은행(IBRD) 차관자금 7천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경영안정, 창업활성화를 통한 신규 고용창출과 실직자를 흡수할 수 있도록 IBRD 차관자금 7천억원 중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지원과 외국인력의 내국인 대체기업 지원에 각각 3천억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1천억원을 기존 기업의 벤처기업 전환에 지원한다는 내용의 「벤처기업 창업 및 고용안정 대책」을 수립,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계획안에 따르면 중기청은 기술력과 사업성이 우수한 예비창업자, 기존 기업의 파생창업자, 발명가, 특히 · 실용신안 보유자, 창업한 지 3년이내의 신생기업을 대상으로 중소·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해 기술신용보증기금을 통해 2천억원, 창투사를 통해 1천억원을 각각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금은 업체당 3억원 한도로 8.5~9.0%의 금리로 2년거치 3년분할 상환 조건이다.

기존 기업의 벤처기업 전환에 지원되는 1천억원은 창투회사를 통한 투·융자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조법」에서 정한 벤처기업으로 전환하는 기존기업이 대상이며, 외국인력을 국내인으로 대체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금 3천억원은 외국인력을 출국시키고 내국인으로 대체 고용한 기업에 3억원 한도에서 기존 2천만원에 대체 고용 1인당 1천만원씩 최고 1억원의 운전자금과 최고 3억원의 시설자금을 8.5~9.0%의 금리로 지원키로 했다.

중기청은 또 이같은 일반 창업 및 육성 지원 외에도 대학(원)생들을 위한 창업지원을 위해 별도의 지원체계를 구축, 정부예산을 투입할 방침으로 우수기술을 보유한 학생들을 교수추천을 통해 우선 심사해 중소기업진흥공단(1백50억

원)이나 중진공과 창투사가 공동출자하는 창업 투자펀드(50억원 규모)를 통해 무담보 신용지원을 추진키로 했다.

중기청은 특히 창업자금의 경우 지원자금의 손실이 높은 점을 감안, 해당 기업 발굴 및 심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며 자금 지급도 창업자의 사업 진척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집행하고 「지원기업실명제」를 도입, 지원되는 전 업체를 데이터베이스화해 철저한 사후관리와 지속적인 기술 및 경영지도를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중기청은 이 사업과 관련, 기술신용보증 기금 전국영업점 및 중진공 각 지역본부를 통해 해당 사업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며 창투사를 통한 지원은 27일부터 각 창투사 및 중진공지역 본부에서 신청 접수할 계획이다.

33개 전기용품 안전기준 IEC규격으로 상향 조정

자동판매기·전자식안정기·전기뜸질기 등 33개 전기·전자제품에 대한 현행 전기용품안전기준이 국제규격인 국제전기 기술위원회(IEC) 규격 수준으로 상향 조정된다.

국립기술품질원은 △전기용품 사용에 따른 소비자보호 △국산제품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수출촉진 △국가간 상호인정확대 등에 대비해 33개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상향 조정키로 하고 이달 안으로 관련 입안예고와 세계무역기구(WTO)통보를 거쳐 오는 6월 기술기준을 개정, 고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품질원이 이번에 마련한 전기용품 안전기준 상향 조정안에 따르면 자동판매기·아이스크림프리저·디스포저 등 3개 품목은 이상운전과 기동특성시험 항목이 추가되며 공기청정기·전기스토브·직류전원장치 등 25개 품목은 온도측정



시험사 정격전압(220볼트)인가 시험에서 정격전압의 115%인 253V로 상향 조정된다.

또 전자식안정기는 이상전원이 유입되거나 램프 수명 말기에 전원을 꺼도 전원이 차단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방전돼 과열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화재를 차단하기 위해 과전류보호장치를 의무화했으며, 화상위험이 높은 전기온수기는 안전레버 등 화상예방장치를, 전기인두와 전기뜸질기는 평상온도상승 시험장치를 추가토록 했다.

한편 품질원은 앞으로도 소비자 안전을 위해 가능성이 높고 수출량이 많은 품목을 중심으로 안전기준을 IEC규격에 맞추도록 유도, 제품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향상을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스파이 특별법 추진

기업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산업스파이 행위」 범위가 대폭 확대되고 처벌도 강화될 전망이다.

산업자원부는 기존에 산업스파이 행위를 처벌 할 수 있는 부정경쟁방지법으로는 처벌대상이

되는 범죄행위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고 처벌도 미약해 갈수록 지능화·고도화하는 스파이 행위를 효율적으로 제지할 수 없다고 보고 특별 법을 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산자부는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 작업을 최근 마무리하고 관련 업계와 정부 관계부처, 정치권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공청회를 거쳐 이르면 이달 중 영업비밀 보호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산자부가 이번에 마련한 법률(안)은 기업의 영업비밀을 부당하게 절취하거나 복사하는 등의 행위는 신분을 막론하고 처벌하며, 고용계약 위임계약, 도급계약 등에 의해 회사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는 사람이 영업비밀을 침해할 때는 가중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영업비밀 범위는 형태와 보존방법에 관계없이 재무·사업·과학·기술·공학 등에 관계된 정보로 기업에 경제적 가치가 있고 비밀로 관리되는 정보는 모두 포함할 예정이다.

이밖에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은 현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새로 제정되는 법률은 최고 10년까지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